

고시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07-31	담당부서	건축과	김창주
고시공고구분	고시	고시공고번호	남원시 고시 제2015-44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남원시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			
내용	남원시 주생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			

남원시 고시 제 2015 - 44호

남원시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남원시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7월 31일

남 원 시 장

1. 사 업 명 : 남원시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
2. 사업목적
 -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·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비 : 3,480.5백만 (국비 2,328백만, 지방비 837백만, 자부담 315.5백만)
4. 주요사업내용
 - 주택정비 : 슬레이트 지붕 개량, 노후주택 개선사업, 빈집정비 등
 - 경관시설 정비 : 마을 담장 정비,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
 - 기반시설 정비 : 도로정비(재포장 및 소방도로 개설), 상·하수도(배수로)정비 등
 - 공동이용시설 : 서만마을회관 리모델링, 제천마을회관 확장 이전 등
 -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계획
5. 사업시행자 : 남원시장
6. 사업기간 : 2015. 7. ~ 2017.12.(3년)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(063-620-65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5-944

고시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07-31	담당부서	도시과	성월계
고시공고구분	고시	고시공고번호	남원시 고시 제2015-45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종합의료시설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			
내용	전라북도 고시 제2015-167호(2015.7.31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종합의료시설)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			

남원시 고시 제2015 - 45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·종합의료시설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전라북도 고시 제2015 - 167호(2015. 7. 31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남원 도시관리 계획(도시계획시설 : 종합의료시설)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전화: 063-620-645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15년 7월 31일

1.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2	종합 의료시설	산곡동 125번지 일원	17,608	감) 17,608	-	전북고시 제1994-329호 ('94.11.26)	

2. 남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종합 의료시설	· 시설폐지 - 면적 0 - 감)17,608m ²	남원시의 인구감소로 해마다 외래환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종합병원으로서 전문의료인력의 영입이 곤란하고 병원의 운영 및 기능이 점차

3. 관련도서 : 실음생략

남원시 공고 제2015-944

공 시 송 달 공 고

2015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7. 31

남 원 시 장

- 1. 제 목 : 2015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15. 7. 31. ~ 2015. 8. 14.
- 3. 납부기한 : 2015. 8. 31.
- 4. 공시송달내용

2015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,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5. 공시송달내역 : 붙임

2015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

(단위:원)

납세자	납세자 번호	과세번호	세액	송달사유	간주납기
유*회* 제일**	211314-*****	140003 201506 2 570 000064	1,864,660	이사불명	2015.08.31
금*목* *설	210114-*****	140003 201506 2 590 000147	846,640	폐문부재	2015.08.31
금**발	200114-*****	140003-201506 2 510 000148	4,060,620	이사불명	2015.08.31
이*재	581002-*****	140002 201506 2 410 000074	2,699,520	수취인없음	2015.08.31

남원시 공고 제2015 - 946호

남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(안) 주민열람공고

남원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15년 07월 31일

1. 남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(안)

가. 공원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	왕정 공원	도시 자연공원	왕정동 산1 일원	1,899,300	감)118,568	1,780,732	건설부 고시 제520호 (1963.08.26)	구적오차 에 따른 면적정정
변경	7	신촌 공원	근린 공원	신촌동 산30 일원	66,500	증)3,470	69,970	건설부 고시 제539호 (1985.12.09)	구적오차 에 따른 면적정정
기정	3	향교 공원	근린 공원	향교동 산19 일원	492,914	-	492,914	건설부 고시 제520호 (1963.08.26)	
기정	5	월락 공원	근린 공원	월락동 산47 일원	64,054	-	64,054	건설부 고시 제539호 (1985.12.09)	
기정	6	노암 공원	근린 공원	노암동 산60 일원	113,850	-	113,850	전라북도 고시 제539호 (1985.12.09.)	
기정	101	운봉 공원	근린 공원	운봉읍 동천리 34-1 일원	45,000	-	45,000	전라북도 고시 제354호 (1974.07.15.)	
변경	201	인월 공원	근린 공원	인월면 서무리 산55 일원	60,000	증)22,390	82,390	전라북도 고시 제354호 (1974.07.15.)	구적오차 에 따른 면적정정

나. 조성계획결정 총괄 조서

공원구분	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주요 도입시설
왕정공원	1,780,732	1,943	자생식물원, 기념비, 신재생에너지체험시설, 다목적구장, 도시텃밭 등
신촌공원	69,970	174	조경광장, 물문화관, 전망대 등
향교공원	492,914	1,387	만인의 충, 숲속쉼터, 쉼터광장 등
월락공원	64,054	86	숲놀이터, 전망대, 진입광장 등
노암공원	113,850	84	생태학습원, 대나무숲 쉼터, 전망휴게소 등
운봉공원	45,000	42	목공예전시장, 허브식물원, 휴게쉼터 등
인월공원	82,390	42	야생초화류원, 우물쉼터, 농경식물원 등

2. 공람기간 : 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

3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

: 남원시 도시과(063-620-6456)

4. 관련도서 : 실음생략

(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)

전북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50호

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 『공매대금 배분계산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7월 30일

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07.30. ~ 2015.08.12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-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(예정), 이의신청기일 통보

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5) ●

붙임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명	자동차번호	주소	사유	비고
㈜뉴*림	23가6885	서울 강남구 테헤란로	이사감	
장*식	95나1487	남원시 송동면 외사촌길	이사감	